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115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조).
- 나.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 기관을 정함 (안 제3조).
- 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방법을 정함 (안 제4조).
- 라. 업무추진비의 공개내용을 정함 (안 제5조).
- 마. 업무추진비의 지출기준을 정함 (안 제6조).

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7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제1항,제2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생략

- 주민조례제정 청구(서명기간) : 2002. 1. 5 ~ 4. 4(3개월)

기타 참고사항

- 검토의견서
- 2003 예산편성기본지침, 「공직자준수사항」 (사본)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공개대상) 공개대상 업무추진비는 시장, 4급이상 공무원 및 시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4조 (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정례적으로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5조 (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

제6조 (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등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경조사 축·조의금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무직공무원은 가급적 축·조화 내지 축·조기, 축·조전으로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은 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실·국·과장 모두 접대인원 1인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하며, 지급할 경우 1인당 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중요한 시책행사를 제외한 외부의 각종행사에 축하 또는 위로의 목적으로 화분, 화환의 전달을 금지한다.
5. 각종 동우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6.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 7.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 8. 공공기관간 화환·화분의 전달 및 전별금품의 전달을 금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이 범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경리담당 박 영 옥
	담당자 성명·전화	박 영 옥 (행정 307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7항의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 할 수 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15
----------	------

발의년월일 : 2003. 2. 11.

발 의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 내용을 수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의 제목 “정의”를 “대상”으로 수정함.
- 안 제3조(공개대상)을 삭제함.
- 안 제4조 “연1회 정례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를 “전년도 집행실적을 2월말까지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1개월간 공개한다”로 수정함.
- 안 제5조(공개내용)의 업무추진비의 공개 내용 중 “집행일시, 집행자”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 안 제6조(시행규칙)을 신설함.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대상”으로 하고, 동조중 “업무추진비라함은”을 “정하는 공개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 실적을 2월말까지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1개월간 공개한다.

제5조를 제4조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집행일시,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업무추진비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한다.</u></p>	<p>제2조(대상).....정하는 공개 및 지출과 관련된 <u>업무추진비는</u></p> <p>.....</p> <p>.....</p> <p>.....</p> <p>.....</p>
<p>제3조(공개대상) <u>공개대상 업무추진비는 시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u></p>	<p>〈삭 제〉</p>
<p>제4조(공개방법) <u>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1회 정례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u></p>	<p>제3조(공개방법) <u>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 실적을 2월말까지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1개월간 공개한다.</u></p>
<p>제5조(공개내용) <u>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u></p>	<p>제4조(공개내용) <u>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집행일시,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u></p>
<p>제6조(생략)</p> <p>〈신 설〉</p>	<p>제5조(원안 제6조와 같음)</p> <p>제6조(시행규칙) <u>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15
----------	------

발의년월일 : 2003. 2. 12.

발 의 자 : 정 윤 섭 의원
외 8 인

1. 수정이유

- 행정집행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왜곡 표현 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코자함.

2. 주요 골자

- 안 제3조(공개방법)의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1개월 간”을 삭제함.
- 안 제4조(공개내용)의 업무추진비의 공개 내용 중 “집행일시”를 삭제함.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 실적을 2월말까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2월말까지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1개월간 공개한다.</p>	<p>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 실적을 2월말까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p>
<p>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집행일시,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p>	<p>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p>